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간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 (中華人民共和国企業年度関連者間取引報告表)>공포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8]114 호

2008 년 12 월 5 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도시의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동 실시조례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기업 연간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를 제정하였다. 기업소득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기업의 연간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간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 (첨부 참조)를 공포함. 각 지역 세무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상술된 보고표를 인쇄, 배포, 학습, 교육 및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 작업에 착수할 것.

첨부:中華人民共和国企業年度関連者間取引報告表

첨부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간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

년도 : _____년

납세자 명칭 (인) :
납세자 식별번호 : □□□□□□□□□□□□□□□□
법정대표인 :
연락처 전화번호 :
신고일 :

관할 세무기관 명칭 (인) :
접수 세무담당관 :
연락처 전화번호 :
접수일 :

관련관계표 (표 1)

관련사 명칭	납세자식별번호	소재국 (지역)	주 소	법정대표인	관련관계유형

취급자 (서명날인) :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

관련사간 거래 총괄표（표 2）

1. 금년도, 규정에 의한 동기자료 (Documentation)의 준비 여부 예□ 아니오□；
2. 금년도는 동기자료（Documentation）의 준비가 면제됨 □；
3. 금년도 원가분담협정의 체결 여부 예 □ 아니오□

금액단위: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거래유형	거래총액	관련사간 거래		국외 관련사간 거래			국내 관련사간 거래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율%	금 액	비율%	비율%
	1	2=4+7	3=2/1	4	5=4/1	6=4/2	7	8=7/1	9=7/2
재료（상품）구매									
재료（상품）판매									
노무수입									
노무지출									
무형자산 양수									
무형자산 양도									
고정자산 양수									
고정자산 양도									
융자로 인한 이자수입	————		——		——			——	
융자로 인한 이자지출	————		——		——			——	
기타									
합 계			——		——			——	

취급자（서명날인）： 법정대표인（서명날인）：

구매판매표 (표 3)

금액단위 :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1. 총 구매판매

원재료 (상품) 구매			금 액	상품 (원재료) 판매			금 액
구매총액 1=2+5				판매총액 8=9+12			
내역	수입구매 2=3+4			내역	수출판매 9=10+11		
	내역	비관련 수입 3			내역	비관련 수출 10	
		관련 수입 4				관련 수출 11	
	국내구매 5=6+7				국내판매 12=13+14		
	내역	비관련 구매 6			내역	비관련 판매 13	
		관련 구매 7				관련 판매 14	

2. 수출무역 방식으로 분류된 수출매상

내료가공	관련 금액	비관련 금액	그 외의 무역방식	관련금액	비관련 금액

3. 수출판매 총액의 10%이상을 점하는 국외판매처 및 거래

국외 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국외 비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	
			———	
			———	

4. 수입구매 총액의 10% 이상을 점하는 국외수입처 및 거래

국외 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국외 비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	
			———	
			———	

취급자 (서명날인) :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

노무표 (표 4)

금액단위: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1. 총 노무거래

노무수입			금 액	노무지출			금 액
노무수입 1=2+5				노무지출 8=9+12			
내역	국외 노무수입 2=3+4			내역	국외노무지출 9=10+11		
	내역	비관련 노무수입 3			내역	비관련 노무지출 10	
		관련 노무수입 4				관련 노무지출 11	
	국내 노무수입 5=6+7				국내 노무지출 12=13+14		
	내역	비관련 노무수입 6			내역	비관련 노무지출 13	
		비관련 노무수입 7				관련 노무지출 14	

2. 국외 노무수입액이 노무수입 총액의 10%이상을 점하는 국외거래처 및 거래

국외 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국외 비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_____	
			_____	
			_____	
			_____	

3. 국외 노무지출액이 노무지출 총액의 10%이상을 점하는 국외거래처 및 거래

국외 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국외 비관련사 명칭	소재국 (지역)	거래금액	가격결정방법	비고
			_____	
			_____	
			_____	

취급자 (서명날인) :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

무형자산표（표 5)

금액단위: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항 목		양 수					양 도				
		거 래 총 액	국외로부터의 무형자산 양수		국내로부터의 무형자산 양수		거 래 총 액	국외로의 무형자산 양도		국내에의 무형자산 양도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1=2+3+4+5	2	3	4	5	6=7+8+9+10	7	8	9	10
사용권	토지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기타										
	합 계										
소유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기타										
	합 계										
총 계											

취급자（서명날인）：　　법정대표인（서명날인）：

고정자산표 (표 6)

금액단위: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항 목		양 수					양 도				
		거래 총액	국외로부터의 고정자산 양수		국내로부터의 고정자산 양수		거래 총액	국외로의 무형자산 양도		국내에의 무형자산 양도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관련사간 거래금액	비관련사간 거래금액
		1=2+3+4+5	2	3	4	5	6=7+8+9+10	7	8	9	10
사용권	건물, 구조물										
	비행기, 열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										
	생산경영활동에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										
	비행기, 열차, 선박 이외의 운송공구										
	전자설비										
	기타										
	합 계										
소유권	건물, 구조물										
	비행기, 열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										
	생산경영활동에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										
	비행기, 열차, 선박 이외의 운송공구										
	전자설비										
	기타										
	합 계										
총 계											

취급자 (서명날인) :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

융통자금표 (표 7)

관련사로부터 채권성투자와 권익성투자의 비율: _____ 금액단위 :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국외관련사 명칭	국가 (지역)	통화	융자금액		이율	융자기간	계상될 이자지출	계상될 이자수입	보증자 명칭	보증료	보증료율
				차입금액	대부금액							
정기 융자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합 계		——	——			—	——			——		——

	국내관련사 명칭	국가 (지역)	통화	융자금액		이율	융자기간	계상될 이자지출	계상될 이자수입	보증자 명칭	보증료	보증료율
				차입금액	대부금액							
정기 융자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합 계		——	—			—	——			——		——
총 계		——	—			—	——			——		——

취급자 (서명날인) :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

대외투자정황표 (표 8)

금액단위: 인민폐 (0.01 위안까지 기재)

1. 기업기본정보			
기업명칭		납세자번호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2. 피투자 외국기업 기본정보			
기업명칭		납세자번호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주요경영주소		설립시기	
법정대표자 거주주소		기장본위통화	
주요업무범위		인민폐 대비 환율	
		납세년도의 기간	

피투자 외국기업의 총주식 정보		기업이 소유한 피투자 외국기업의 주식정보			
총주식수	기간	주식정보	기간	주식 수량	지분비율%
1	2	3	4	5	6=5/1

3. 피투자 외국기업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지정한 비저세율국 (지역)에 소재하는가. 예 □ 아니오□

4. 피투자 외국기업의 연간 이익이 500 만 위안 이하인가. 예 □ 아니오□

5. 피투자 외국기업의 연도 기업소득세의 조세부담 정보

과세소득액	실제납부 소득세액	세후 이익액	실효세율%	피투자 기업의 법정 소득세율
7	8	9=7-8	10=8/7	11

6. 피투자 외국기업의 모든 주식 정보

주주 명칭	국가 (지역)	납세자 번호	주식종류	기간	출자총액내 비율%

대외투자정황표 (표 8)

위 표의 계속 금액단위: 인민폐 (0.01 까지 기재)

7. 피투자 외국기업의 연도 손익계산서		8. 피투자 외국기업의 대차대조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매출액		현금	
매출원가		매출채권	
매출총이익		재고자산	
배당수입		기타 유동자산	
이자수입		주주 혹은 기타 관련사로의 대부금	
임대료, 특허권사용비수입		부속기관에 대한 투자	
자산양도수익 (손실)		기타 투자	
기타 수입		건축물 및 기타 감가상각 가능 자산	
보상지출 공제액		토지	
임차료, 특허권사용지출총액		무형자산	
이자지출		기타 자산	
감가상각비		자산 총액	
세금		매입채무	
기타 공제		그외 유동부채	
연도 이익총액		주주 혹은 기타 관련사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부채	
		주식자본금	
		미처분 이익	
		부채 총액	

9. 기업이 피투자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정황		
금년도 배당금액	금년도 중 실제 분배된 배당금액	비율%
12	13	14=13/12

취급자 (서명날인):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대외지불금액 정황표（표 9）

금액단위：인민폐（0.01 위안까지 기재）

항　　목	금년 국외 지불 금액	그 중, 국외 관련사 지불 금액	기업소득세의 원천징수금액	조세협약 혜택 수혜 여부
1.배당금				
2.이자				
3.임차료				
4.특허권사용비				
그 중：상표권비				
기술사용비				
5.자산양도지출				
6.커미션				
7.설계비				
8. 컨설팅비				
9.연수비				
10.관리서비스비				
11.청부공사대금				
12.건축설비대금				
13.문화오락, 스포츠 공연대금				
14.인증검사비				
15.시장개발비				
16.A/S 비				
17.기타				
그 중：				
합　계				

취급자 (서명날인):　　법정대표인 (서명날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관련사간 거래 보고표
기입설명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제 43 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고표를 제정함.

2. 본 보고표는 <관련관계표 (표 1)>, <관련사간 거래 총괄표 (표 2)>, <구매판매표 (표 3)>, <노무표 (표 4)>, <무형자산표 (표 5)>, <고정자산표 (표 6)>, <융통자금표 (표 7)>, <대외투자정황표 (표 8)>, <대외지출금액 정황표 (표 9)>의 9 가지 보고표를 포함한다.

3. 본 보고표는 실제소득에 근거하여 납세를 하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실제 수입액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세하는 비거주자 기업에 적용된다.

4. 기업은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신고표를 제출할 때, 본 보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납세자명칭>: 세무등기증에 기재된 납세자의 명칭을 기입한다.

6. <납세자식별번호>: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교부한 세무등기번호를 기입한다.

관련관계표 (표 1):

1. <납세자식별번호>: 관련사의 소재국 혹은 지역에서 납세신고시 쓰이는 납세자 식별번호를 기입한다.

2. <소재국(지역)>: 관련사의 소재국 혹은 지역의 명칭을 기입한다.

3. <주소>: 관련사의 등록주소와 실제 경영관리기구의 소재지 주소 혹은 관련 개인의 주소를 기입한다.

4. <관련관계유형>: 이하의 관련관계 기준에 따라 A, B, C 등의 기호를 기입한다. 복수의 관련관계 유형이 있는 경우, 복수의 기소를 기입해야 한다.

A. 일방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일방의 출자 총액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혹은 쌍방이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제 3 자에 의한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방이 중간자를 통하여 다른 일방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방의 중간자에 대하여 지분비율이 25%이상인 경우, 일방의 다른 일방에 대한 지분 비율은 중간자가 그 다른 일방에 보유한 지분비율과 같게 인식한다.

B. 일방이 다른 일방 (독립된 금융기구 제외) 사이의 대차자금이 일방의 실질자본의 50% 이상을 점하는 경우, 혹은 일방의 대차자금 총액의 10%이상에 대하여 다른 일방 (독립된 금융기구 제외)의 보증을 받은 경우

C. 일방의 과반수 이상의 고위 관리자 (동사회 임원과 매니저를 포함) 혹은 최소한 1 명의 동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동사회의 고위 임원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파견된 경우, 혹은 쌍방의 과반수 이상의 고위관리자 (동사회 임원과 매니저를 포함) 혹은 최소한 1 명의 동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동사회의 고위 임원이 동일한 제 3 자로부터 파견된 경우.

D. 일방의 과반수 이상의 고위 관리자 (동사회 임원과 매니저 포함)가 동시에 다른 이방의 고위 관리자 (동사회 임원과 매니저 포함)로 근무하는 경우, 혹은 일방의 최소한 1 명의 동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고위 임원이 동시에 다른 일방의 동사회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E. 일방의 생산경영활동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공업소유권, 기술 노하우 등의 특허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경우

F. 일방의 구매 혹은 판매활동이 주로 다른 일방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G. 일방의 노무의 수입 혹은 제공이 주로 다른 일방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H. 일방의 다른 일방의 생산경영 및 거래를 실절적으로 통제하거나 쌍방이 그 외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A 의 출자비율에는 달하지 않느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주요한 출자자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경제이익을 받는 경우 및 가족, 친족관계 등이 있는 경우

관계사간 거래 총괄표 (표 1):

1. 본 표는 표 3 부터 표 7 까지의 총괄정황이다. 그 외의 거래유형의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유형의 거래금액은 표 3 부터 표 7 까지의 각 표의 거래유형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상품) 구매 제 1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1 항

재료 (상품) 구매 제 4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4 항

재료 (상품) 구매 제 7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7 항

2) 상품 (원재료) 판매 제 1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8 항

상품 (원재료) 판매 제 4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11 항

상품 (원재료) 판매 제 7 열 = 표 3 구매판매표의 제 14 항

3) 노무수입 제 1 열 = 표 4 노무표 제 1 항

노무수입 제 4 열 = 표 4 노무표 제 4 항

노무수입 제 7 열 = 표 4 노무표 제 7 항

4) 노무지출 제 1 열 = 표 4 노무표 제 8 항

노무지출 제 4 열 = 표 4 노무표 제 11 항

노무지출 제 7 열 = 표 4 노무표 제 14 항

5) 무형자산양수 제 1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1 열

무형자산양수 제 4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2 열

무형자산양수 제 7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4 열

6) 무형자산양도 제 1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6 열

무형자산양도 제 4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7 열

무형자산양도 제 7 열 = 표 5 무형자산표 총계 제 9 열

7) 고정자산양수 제 1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1 열

고정자산양수 제 4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2 열

고정자산양수 제 7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4 열

8) 고정자산양도 제 1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6 열

고정자산양도 제 4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7 열

고정자산양도 제 7 열 = 표 6 고정자산표 총계 제 9 열

9) 융자로 인한 이자수입 제 4 열 = 표 7 융통자금표 합계 1 제 8 열

융자로 인한 이자수입 제 7 열 = 표 7 융통자금표 합계 2 제 8 열

융자로 인한 이자지출 제 4 열 = 표 7 융통자금표 합계 1 제 7 열

융자로 인한 이자지출 제 7 열 = 표 7 융통자금표 합계 2 제 7 열

10) 기타는 상기 열거된 업무유형 이외의 업무발생 금액을 지칭한다.

2. 금년도, 규정에 의한 동기자료 (Documentation)의 준비 여부, 예 □ 아니오□:

관련규정에 따라 동기자료 (Documentation)를 준비한 기업은 "예 □",에√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 □"에√표시를 한다.

3. 금년도 동기자료 (Documentation)의 준비가 면제됨, 예 □ 아니오□:

동기자료 (Documentation) 준비의 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예 □"에 √를 표시한다.

4. 금년도 원가분담약정의 체결 여부, 예 □ 아니오□:

금년도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 □",에√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 □"에√표시를 한다.

구매판매표 (표 3):

1. <구매총액>: 본년도에 구매한 원재료, 반제품, 재료 (상품) 등의 유형자산의 금액을 기입한다. 고정자산, 공사물자와 저가 소모품은 포함치 않는다.

2. <판매총액>: 본년도에 판매된 모든 상품(재료)의 금액을 기입한다.

3. <내료가공>: 수령한 가공비 금액을 기입한다.

4. <소재국(지역)>: 국외 관련사 혹은 비관련사의 소재국 혹은 지역의 명칭을 기입한다.

5. <가격결정방법>: 이하의 6 종료로 나뉜다. 1) 제 3 자가격비교법 2) 재판매가격 기준법 3) 원가가산법 4) 거래순이익법 5) 이윤분할법 6) 기타 방법. 본 란에는 대응하는 숫자를 기입힌다. 6)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노무표 (표 4):

1. <국외노무수입>: 기업이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기입한다.

2. <국외노무지출>: 기업이 노무의 제공을 받고, 국외에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3. <국가(지역)>: 국외관련사 혹은 비관련사의 소재국 혹은 지역 명칭을 기입한다.

4. <가격결정방법>: 이하의 6 종료로 나뉜다. 1) 제 3 자가격비교법 2) 재판매가격 기준법 3) 원가가산법 4) 거래순이익법 5) 이윤분할법 6) 기타 방법. 본 란에는 대응하는 숫자를 기입힌다. 6)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융통자금표 (표 7):

1. 기업이 관련사로부터 받은 채권성투자와 권익성투자의 비율 = 연도 각 월의 관련사로부터의 채권투자의 평균 합/ 연도 각 월의 권익투자의 평균 합. 그 중 각 월의 관련사로부터의 채권투자 평균 = (관련사로부터의 채권투자 월초장부 잔액 + 월말장부 잔액) / 2 ; 각 월의 권익투자 평균 = (권익투자의 월초장부 잔액 + 월말장부 잔액) / 2

2. 정기융자는 각 융자에 대하여 각각 기입하고, 차입과 대부는 같은 행에 기입할 수 없다.

3. <소재국(지역)>: 국외 관련사의 소재국 혹은 지역의 명칭을 기입한다.

4. <이율>: 융자의 연이율을 기입한다.

5. <계상될 이자지출> 또는 <계상될 이자수입>: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계산한 계상될 이자지출 또는 계상될 이자수입을 기입한다. 계상될 이자지출에는 자본화된 이자지출을 포함한다.

6. 금액단위가 외화인 경우, 납세년도의 최후 1 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값에 의거 인민폐로 환산한다.

대외투자정황표 (표 8):

1. 본 표는 외국 (지역) 기업의 주식을 가진 중국 거주자기업에 적용된다.

2. <피투자 외국기업의 기본정보>: 기업이 투자한 외국기업의 기본정보를 기입한다. 기업이 복수의 외국기업에 투자한 경우, 각각 기입한다. 그 중 <인민폐 대비 환율>은 연도의 12 월 31 일 기장 본위 통화의 인민폐에 대한 환율의 중간값을 기입한다.

3. <피투자 외국기업의 총주식 정보>와 <기업이 보유한 피투자 외국기업의 주식 정보>: 외국기업의 모든 주식 수량과 기업이 보유한 주식수량을 기입한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 우선주 및 그 외 주식과 유사한 권익성 자본 등으로 분류하고, 기간별로 기입한다.

4.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본 표의 <외국기업>을 준용한다.

대외지불금액 정황표 (표 9):

1. <금년도 국외로 지불금액>: 금년도에 국외로 실제 지불된 금액을 기입한다.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나, 금년도의 원가 비용에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조세협약 혜택 수혜 여부>: <예>, 혹은 <아니오>를 기입한다.

3. <기업소득세 원천징수금액>: 해당 지불금액에 대한 비거주자 기업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기입한다. 비거주자 기업의 소득세의 원천징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기입한다.

4. <배당금>: 권익성 투자자에게 지불한 투자수익을 기입한다.

5. <이자>: 채권성 투자자에게 지불한 투자수익을 기입한다.

6. <임차료>: 고정자산 등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임대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7. <특허사용비>: 지불된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비를 기입한다.

8. <자산양도지출>: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기입한다.

9. <커미션>: 상품의 구매/판매처를 소개하고 거래를 성립시킨 중개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이 비용에는 커미션, 수수료, 사례금 등이 포함된다.

10. <설계비>: 수탁측에 건축, 공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젝트의 설계를 위탁하여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11. <컨설팅비>: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기입한다.

12. <연수비>: 업무기능, 전문지식, 시스템 조작, 설비 조작 등의 연수를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13. <관리서비스비용>: 각종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된 비용을 기입한다.

14. <청부공사대금>: 조립, 탐사 등의 공사작업 또는 관련 공사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대금을 기입한다.

15. <건축설비대금>: 건축, 설비 등의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한 대금을 기입한다.

16. <문화오락, 스포츠 공연대금>: 해외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국내의 문예, 스포츠 등의 공연대금을 기입한다.

17. <인증검사비>: 자질, 증서, 제품검사 등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된 비용을 기입한다.

18. <시장개척비>: 시장개발, 개척, 침투 등과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된 비용을 기입한다.

19. <A/S 비>: 제품의 검사, 수리, 관리 등의 A/S 를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기입한다.

20. <기타>: 상술된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 지출을 기입한다. 주요 항목은 아래 란에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